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3057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(대통령령 제33358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제1항 중 “2025년 3월 30일”을 “2027년 3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대통령령 제3057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(대통령령 제33358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획조사팀은 <u>2025년 3월 30일까지</u> 존속한다. ② (생략)	대통령령 제3057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(대통령령 제33358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</u> <u>3월 30일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28